KOSHA GUIDE

C - 109 - 2017

4.2 도급업체 사업주의 주요 임무

- (1) 화기작업, 밀폐공간 작업 등 고위험 작업에 대한 소속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해당 작업에 대한 작업표준 작성 및 작업 공정에 대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 (2) 근로자에게 작업환경에 따른 유해·위험요인별로 <표 1>과 같은 보호구를 지급·착용하도록 하고 소방·구호장비를 구비하여야 한다.

보호구	일반 보호구	안전모, 안전대, 안전화, 보안경, 보안면, 귀마개·귀덮개
	호흡용 보호구	방진마스크, 방독마스크, 송기마스크, 전동식 호흡보호구
	내화학 보호구	전신보호복, 부분보호복, 화학물질용 안전장갑・안전장화
소방・구호장비		소화기, 휴대용비상조명등, 사다리, 섬유로프, 인공소생기,
		확성기, 호각, 통화장치, 구조용 들것

- (3) 화학물질을 취급해야 하는 경우,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화학물질 취급 작업장 내에 비치하여야 하며, 저장용기에 경고표시를 하고 취급하는 근로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4) 소속 근로자에게 플랜트 개·보수 공사 시 발생할 수 있는 화재·폭발, 질식, 감전 등의 위험성과 비상 시 조치 사항에 대해 주지시키고 충분히 알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 (5) 현장에서 수행되는 주요 고위험 작업에 대해서 발주자로부터 안전작업허가서를 발급 받은 후 작업하여야 한다.
- (6) 화기작업 시 폭발성·발화성·인화성 물질의 농도를 측정하고, 밀폐공간 작업 시에는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하여야 한다.